

# [ 변경 대비표 ]

1. 펀드명 : 우리모아드림삼성그룹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2. 작성기준일 : 2020.04.20

3. 효력발생일 : 2020.05.07

3. 정정사유

- ① Class A,A-G,C,C-G,C-F,C-W,S의 환매수수료 삭제
-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(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지원확대)
- ③ 당사 규정 정비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기재 정정
- ④ 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및 시행령 제215조 개정사항 반영
- ⑤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4. 투자설명서

구분	정정사유	변경(전)	변경(후)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운용전문인력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A,A-G,C,C-G,C-F,C-W,S: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, 30 일 이상 9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% C-P, C-Pe,C-P1,C-P1e : 없음	없음
<b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 (3) 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<정정 전 1>	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<정정 전2>	<정정 후 2>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 (2) 상환금등의 지급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○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b>한국예탁결제원</b> 을 통하여 그 사실을	○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채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b>전자등록기관</b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

		통지하여야 합니다.	지하여야 합니다.
나. 과세 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(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지 원확대)		
<b>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<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재무정보, 수익률 등 업데이트 >			
<b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 항 다. 최근 2개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 데이트	-	-
<b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 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 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b>예탁 결제원</b> 에 위탁하여야 하며, <b>예 탁결제원</b>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 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 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.  (5) 투자신탁의 합병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 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<b>한국 예탁결제원</b> 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	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 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<b>전자 등록기관</b> 에 위탁하여야 하며, <b>전자등록기관</b> 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 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 다.  (5) 투자신탁의 합병 ④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 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하 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<b>전자 등록기관</b> 을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 한 사항 가. 업무보고서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 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(2)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한 판매회사 또는 <b>예탁결제 원</b> 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, 투 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 제1호의 방법 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원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	(2)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한 판매회사 또는 <b>전자등록 기관</b> 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, 투 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 제1호의 방법 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원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

		합니다.	합니다.
4.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다.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	당사 규정 정비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기재 정정	-	-

<정정 전 1>

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.

구 분		지급비율(연간, %)											
		A	A-G	C	C-G	C-F	C-W	S	C-P	C-Pe	C-P1	C-P1e	
종류		수수료선취-오프라인	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	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	
환매수수료	30일 미만	이익금의 70%						없음					
	30일 이상 ~ 90일 미만	이익금의 30%											

<정정 전2>

구 분		지급비율(연간, %)										지급시기		
		A	A-G	C	C-G	C-F	C-W	S	C-P	C-Pe	C-P1		C-P1e	
선취판매수수료		납입금액의 1% 이하	납입금액의 0.75% 이하	-	-	-	-	-	-	-	-	-	매입시	
후취판매수수료		-	-	-	-	-	-	3년 미만 :환매금액의 0.15% 이내	-	-	-	-	환매시	
환매수수료	30일 미만	이익금의 70%						없음						환매시
	30일 이상 ~ 90일 미만	이익금의 30%												환매시

<정정 후2>

구분	지급비율(연간, %)											지급시기	
	A	A-G	C	C-G	C-F	C-W	S	C-P	C-Pe	C-P1	C-P1e		
	수수료선취-오프라인	수수료선취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무권유저비용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랩	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퇴직연금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퇴직연금	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개인연금	수수료미징구-온라인-개인연금		
선취판매수수료	납입금액의 1% 이하	납입금액의 0.75% 이하	-	-	-	-	-	-	-	-	-	-	매입시
후취판매수수료	-	-	-	-	-	-	3년 미만 : 환매금액의 0.15% 이내	-	-	-	-	-	환매시
환매수수료	없음											환매시	

### 5. 간이투자설명서

구분	정정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투자비용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운용전문인력	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	-	-
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A,A-G,C,C-G,C-F,C-W,S:3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%, 30 일 이상 90 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% C-P, C-Pe,C-P1,C-P1e : 없음	없음

### 6. 집합투자규약

구분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신설>	9.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함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.
제9조(수익권의 분할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을 발행한다.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

		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 <b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</b> 」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	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<b>전자증권법</b> 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.
제14조(수익자명부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b>한국예탁결제원</b>	<b>전자등록기관</b>
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수수료 관련 문구 삭제	①~②<생략>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b>환매수수료 및</b>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④<생략>	①~②<이하동일> 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삭제>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 ④<이하동일>
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	<b>한국예탁결제원</b>	<b>전자등록기관</b>
제41조(환매수수료)	환매수수료 삭제	①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 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lass C-P, Class C-Pe, Class C-P1, Class C-P1e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④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	<b>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b>

		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 (Class C-P1, Class C-P1e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“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”)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	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	환매수수료 관련 문구 삭제	<p>①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 신탁계약의 변경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①~③ &lt;이하동일&gt;</p> <p>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&lt;삭제&gt;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자본시장법 시행령제215조 개정사항 반영	<p>①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&lt;신설&gt;</p> <p>⑤ &lt;신설&gt;</p>	<p>①~③ &lt;이하동일&gt;</p> <p>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제 5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 <p>⑤ 제 4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와 수익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, 변경시행일 전 까지 상호협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대상금액 :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시행일 전일까지 제</p>

			<p>39 조제 3 항에 따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보수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, 사업성평가, 금융자문 등)</p> <p>2. 대상기간 : 변경시행일로부터 1 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p>
제45조(집합투자 기구의 해지)	환매수수료 관련 문구 삭제	<p>①~② &lt;생략&gt;</p> <p>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 <p>④~⑤ &lt;생략&gt;</p>	<p>①~② &lt;이하동일&gt;</p> <p>③&lt;삭제&gt;</p> <p>④~⑤ &lt;이하동일&gt;</p>
제47조(투자신탁의 합병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b>한국예탁결제원</b>	<b>전자등록기관</b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전자등록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	<b>한국예탁결제원</b>	<b>전자등록기관</b>